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2024. 12.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2261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피해구제 제도까지 통합하는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위원회 명칭 및 위원수 변경사항 반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